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시론적 고찰: 사회적 기업의 개념, 현황,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엄형식 (한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1. 서론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자, 비영리민간부문의 발전방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조직의 형태이다. 최근들어 사회양극화가 화두가 된 한국사회에서도 종종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주로 정책생산자들을 중심으로 소개됨으로서, 정책적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 글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론적 쟁점을 다룸으로서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의 위를 위한 시론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가진다.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현황

1) 사회적 경제의 정의

유럽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1980~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매우 새로운 개념인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사용되었던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조직적 토양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활로, 변형된 형태로 여겨지기도 하며, 가끔은 분명한 구분이 없이 동일한 실체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mutual¹⁾), 민간단체(association)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경제로 새롭게 포함되고 있는 재단(foundation)으로 구성된 비영리적인 경제조직 부문을 가리킨다. 비영리라는 의미는 경제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이익이 조직의 소유자 및 자본투자자에게 배타적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발전에 재투자되거나, 공익적인 목적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²⁾. 경제조직이란 적극적인 의미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고 일정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부터, 소극적으로는 일정정도의 고용과 경비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활동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한국에서는 상호공제조합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보험이 상호공제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비생명보험부문에서 상호공제조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건강상호공제조합은 민간건강보험시장의 85%를 점하고 있다. (www.europa.eu.int/comm/enterprise)

2)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의 경우, 이익의 일정 부분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조합원이 단순한 자본투자자의 위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분을 이유로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을 영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본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애초 프랑스,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불어권 지역에서 사용되던 개념이었으나, 차츰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에서 사회발전전략, 특히 지역개발전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사회적 경제가 공식적으로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³⁾. 유럽연합 뿐만이 아니라, OECD에서도 LEE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개념정의와 분석, 그리고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Roelants, 2002).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Salamon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NPO) 비교연구가 제시하는 비영리단체의 기준과는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Salamon, 1997). 존스홉킨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은 비영리단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제3섹터, 제3시스템이라는 범주가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동일한 영역을 일컫거나, 적어도 상당 부분 동일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Campbell, 1999).

2) 사회적 경제의 현황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쓰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대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의 규모를 범유럽 차원의 사회적 경제관련 조직 연합체인 CEP-CMAF⁴⁾와 유럽연합 B3의 자료를 통해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유럽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유형	조직수(개)	조합원/회원(명)
협동조합	132,000	83,500,000
상호공제조합	?	155,000,000
민간단체	50,000	9,000,000
재단*	550	-

* 200여개의 재단과 350여개의 지역사회자선기금
출처 : 유럽연합 Unit B3 및 CEP-CMAF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사회적 경제가 1980년대부터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새로

- 3)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89년부터 기업국(Enterprise Directorate-General : DG Enterprise) 산하에 사회적 경제부(Social Economy Unit)를 설치하여, 사회적 경제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관련부문의 조직들과의 대화를 진행해왔다. 2000년부터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체계 개편에 따라 기업국 산하 “수공업, 소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상호공제조합”을 관장하는 B3부 (Unit B3)로 통합되었는데, 이 부서는 특히 사회적 경제의 기업적 측면에 대해 관련되어 있다. (www.europa.eu.int/comm/enterprise)
- 4) CEP-CMAF는 2000년 11월 5개의 범유럽차원 사회적 경제부문의 조직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5개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ACME (Association of European Cooperative and Mutual Insurers : 상호보험), AIM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s : 상호공제조합), CCACE (Coordinating Committee of Associations of Cooperatives of Europe : 협동조합), CEDAG (European Committee for Voluntary Organizations : 민간단체), EFC (European Foundation Centre : 재단). CEP-CMAF의 목적은 ①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 행위자들의 역할과 가치를 증대 ② 기업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전파 ③ 유럽연합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치적, 법적 인정을 확산 ④ 지역정책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증진 ⑤ 유럽시민정신의 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www.cepcmaf.org).

은 고용창출 잠재력, 사회적 서비스 제공 효과, 낙후한 지역사회의 개발에서의 역할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가시적인 효과인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정책적 유용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9년 유럽 8개국에서 재단을 제외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의 고용효과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유럽 8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고용효과

조직유형	고용규모(명)	총 고용 대비 비중	총 피고용자 대비 비중
독일			
-협동조합	495,000		
-상호공제	143,000		
-민간단체	1,630,530		
합계	2,241,530	6.29%	7.04%
벨기에			
-협동조합	33,500		
-상호공제	11,230		
-민간단체	226,280		
합계	271,010	7.15%	8.27%
스페인			
-협동조합	410,700		
-상호공제	21,234		
-민간단체	439,322		
합계	871,256	7.06%	9.44%
핀란드			
-협동조합	80,000		
-상호공제	?		
-민간단체	70,000		
합계	150,000	7.35%	8.82%
프랑스			
-협동조합	325,627		
-상호공제	85,000		
-민간단체	1,300,000		
합계	1,710,627	7.71%	8.88%
포르투갈			
-협동조합	45,082		
-상호공제	1,078		
-민간단체	59,735		
합계	105,895	2.39%	3.34%
영국			
-협동조합	181,000		
-상호공제	27,500		
-민간단체	1,473,000		
합계	1,681,500	6.59%	7.62%
스웨덴			
-협동조합	100,000		
-상호공제	8,000		
-민간단체	75,000		
합계	183,000	4.59%	7.21%
8개국 합계	7,214,818	6.56%	7.69%

출처 : CIRIEC, Provisional Result (1999), Campbell, 1999 재인용

1999년 현재 유럽 8개국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7백여만 명으로, 이는 유럽연합 실업자수의 39%이고, 유럽연합 농업부문 종사자보다 많은 수이며, 유럽연합

자영업자들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사회적 경제부문은 유럽 전체 고용의 약 7%라는 높은 고용효과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특성에 있어서 여성, 취약계층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3. 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 경제가 유럽의 산업화 및 근대화와 맞물리면서 발전한 200여년의 전통을 가진 부문이라면, '사회적 기업'은 1980년대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유형의 조직이 앞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회적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고,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취약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시킨다는 관점에서 영리적 자원과 비영리적 자원을 혼합하는 사업을 가리켰으나, 점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는 조직들도 포함하게 되었다(OECD, 1999).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이윤비분배)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태에 들어가면, 국가에 따라, 법적형태에 따라, 운영방식에 따라, 소유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래의 표는 사회적 기업의 속성별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속성들의 조합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사회적 기업들이 가지는 다양한 속성의 편차

소유방식	신탁에 의한 소유(trustee)	상호적(mutuals)
재원	기부, 보조(donation, grants)	판매(sales)
사회적 목적	사회공헌기업(social responsible business)	사회적 소유(socially owned)
개발의 초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사업의 발전(business development)
목표시장	지역시장(local markets)	보다 넓은시장(wider markets)

출처 :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되는 조직들의 속성들을 분석한 후, 이들 속성을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정의내리고 있다⁵⁾. 유럽의 사회적 기업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했던 EMES 네트워

5) 이러한 방식을 측정기반 접근법(Test-Based Approach)라고 한다. 즉, 조직의 실제 자체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몇 가지 명제로 유형화하여, 각각 명제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COTEC, 2003).

크6)에서 사용한 사회적 기업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 기업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 생산 및 판매 • 높은 자율성 •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 최소한의 유급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 • 시민그룹의 주도로 설립 •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성격 • 제한적인 이윤배분

출처 : Defourny, 2001

한편, 사회적 기업이 법제화되어 있는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규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1)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사회적 기업 등장의 배경변인 중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령화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이민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이다. 서유럽에서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가 요청되며, 특히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학의 발달로 병상의 노인들의 생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을 돌보는 케어서비스가 중요한 욕구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 및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민인구의 증가는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민자들이나 이민자 2세대들이 처하기 쉬운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또한 요구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등장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은 실업율의 증가와 사회의 양극화이다. 2차 대전이후 서구유럽을 지배했던 계급타협 체제가 붕괴하면서 기존 노동자 계급의 상당수와 새로운 인구 즉 청년층과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유럽에 밀려온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자본주도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회복을,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경기가 회복되었든, 지속적으로 침체되었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계급타협 시기에 대다수 국민들을 보호했던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붕괴되거나 후퇴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 및 빈곤에 빠지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 이민자, 청년층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실업과 빈곤의 증가는 더 나아가 특정 지역의 경제적 붕괴와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범죄, 마약, 문화적 소외 등)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6) EMES 네트워크는 L'Émergenc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Europe의 약자로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전체 유럽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현상의 등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네트워크이며, 이후에도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연구자 네트워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www.emes.net).

사회문제는 통칭하여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표현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가는 곧 경제위기로 인해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된 서민층에서 극우정치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켰고, 이는 사회의 통합력을 저하시키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제한적인 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음에 비해 각종 사회운동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의 상당 부분은 장기실업자, (주로 이민2세대들인) 청년실업자들에 대해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쇠퇴에 의해 쇠락한 지역사회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지역 내의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형 사회적 기업들이 발달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비단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케 할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제도의 변화

1973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유럽 복지국가의 재정을 압박하면서, 국가주도의 복지전달체계를 뒤흔들었다. 이는 영국과 같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의 나라들에서도 연금개혁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해 복지국가의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동자계급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이 공동의 정치적, 경제적 틀거리들을 확대해가면서 설정한 재정적자에 대한 제한은 개별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충분한 복지서비스 확충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이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복지공급방식에 있어서 시장방식의 도입이다.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시장방식의 도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보다 저렴한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을 계약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시장의 선택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이 민영화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였으며, 그 빈자리에 영리기업이 진입하게 되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는 복지서비스 전달의 변화에 힘입어 시장을 확보해 왔다. 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한 시장방식의 도입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서비스 공급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으나, 시장논리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주제이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소유주의 이윤을 충분히 보상할 필요가 없는 소유구조와 사회적 기업이 갖는 공익적인 이미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시장에 참여하였고 상당 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먼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일반 영리기업의 배타적 성격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용자의 운영에 대한 참여는 사회적 기업의 탁월한 경쟁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갖는 소유와 운영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복지서비스 시장참여는 '민영화(privatization)'가 아닌 '사회화(socialization)'로 불리고 있다(Spear, 1998).

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또는 지역사회 보호)로의 정책전환이다. 이 변화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70년대 이후 푸코 등 진

보적 이론가들에 의해 개진된 논의로서, 시설이 정신질환자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사실상 사회로부터 구분짓고, 배제시키는 메커니즘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나라에서 시설방식의 정신병원의 폐쇄를 가져왔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신병원이 폐쇄된 1978년 이후 지역사회로 돌아온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및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SEL, 2000). 또 다른 요인은 시설방식의 복지서비스를 고비용 구조로 평가하고, 저비용이 가능하고 전담인력에 의한 재정통제(gate-keeping)가 가능한 지역사회 케어의 확산이다. 1993년 영국의 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 케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시설의 축소 및 폐쇄와 지역사회 케어서비스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시설에서 보호받던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홈케어,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케어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케어서비스의 전달은 시장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리기업의 참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Spear, 2001a).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지방분권화이다. 사회적 기업들은 연합체의 방식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된 특징은 지역사회에 밀착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대기업이나 거대조직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미미한 행위자로 보일 수 있지만 지역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독자적인 위치와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정책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사회적 기업이 발굴한 지역의 새로운 욕구와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안되거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능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2년부터 사회당 정부에 의해 지방분권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 정책은 지방분권화의 도구로서 사회적 경제부문의 협력 및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부문 조직들의 기반을 강화시켜 주었다(Archambault, 1997). 이때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부문의 활성화는 사회적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단지 긍정적인 의도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1993년 지역사회 케어에 대한 영국의 법률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보호의 책임을 지자체로 이전시킴으로서 지자체가 재정압박에 의해 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외주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Spear, 2001a).

3) 민간의 주도성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낸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 시민사회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가 깊게 각인되어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의 경우, 강한 공화주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이 공화주의 전통은 국가와 개인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와 개인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좌파정당 역시 국가를 '공공(public)'의 실행태로 간주하고, 국가중심적인 정책을 선호하

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전 유럽에 걸쳐 공화주의 세력과 좌파 정치세력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을 선호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를 실험해왔다. 반면 유럽 대부분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경향과 영국을 중심으로 뿌리내려있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자유주의 경향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조직들에 의해 사회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20세기 이후, 전반적인 유럽의 시민사회 지형은 국가에 우호적인 좌파와 국가에 적대적인 우파에 의해 크게 규정되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된(그래서, 국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진보적 시민운동이 존재하는)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 및 동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사회적 기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시민사회의 흐름은 전통적인 좌파의 구도에 균열을 낸 1960년대의 사회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흔히 68세대로 통칭되는 세대를 만들어낸 1960년대의 급진적 사회운동은 관료화되고, 경직된 국가주의에 경도된 전통적 좌파와는 달리 자발적이고 대안적인 성격을 가진 풀뿌리 시민그룹을 활성화시킨 추진세력이 되었다. 이들 사회운동은 좌파의 국가중심주의와 우파의 시장중심주의에 맞서면서 성장했고, 신자유주의가 우세해진 198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 좌파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맞서고 있지만, 동시에 변화한 사회에 조용하지 못하는 전통적 좌파에 대한 정치적 비판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풀뿌리적 성격과 유연하고 창발적인 역동성, 그리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해결노력은 많은 부분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운동에 뿌리를 둔 사회적 기업이나 조직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대안 경제의 행위자로 간주하고 '연대의 경제'라는 개념으로 정부나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 차별성을 긋고자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상호주의 전통의 역할이다. 협동조합,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은 직접 사회적 기업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고, 소유구조와 운영구조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디어가 가능했던 것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주의 전통 속에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와 아이디어, 그리고 상호주의 문화를 체득하고 있는 인적 자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민간의 주도성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등으로 인한 신규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삼는 영리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사례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변화에 의해 시민사회가 동원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준데, 적어도 이들 중 일부는 정부의 제도를 통해 형성된 기회구조에 접근하고자 만들어진 시민단체들이고 이는 정부에 의한 동원으로 파악될 수 있다(Worms, 2002).

5. 해외의 사회적 기업 사례 - 영국

1) 사회적 배경 - 자원부문의 발달과 복지국가의 변화

유럽대륙의 국가와 달리 영국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보다는 자원부문 (voluntary sector)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자원부문은 사회적 경제에서 포괄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자선단체와 자조조직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국의 자원부문은 중세 이후 교회의 교구제도에 바탕을 둔 학교 및 빈민구제를 위한 다양한 조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한 박애의 전통에 덧붙여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자계급에 바탕을 둔 상호주의 전통이 생겨났다. 우애조합과 협동조합으로 상징되는 상호주의는 보험과 생산 및 분배수단의 소유를 통해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자기개선과 교육이라는 혜택을 창출하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호작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박애의 전통은 1601년 자선법을 통해, 상호주의의 전통은 1793년 우애조합에 대한 로즈법과 1843년과 1862년의 I&P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노동당의 정치적 힘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주의 전통의 조직들은 점차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시작하고, 노동당의 사회주의가 협동조합적 방향보다 국가중심적인 방향을 지향하면서 점차 내외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0년대 중반이후 전면화된 복지국가 체제는 박애적인 것이든 상호주의적인 것이든 간에 자원부문을 복지국가의 하위파트너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부문은 몇몇 영역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국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복지국가 체제의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자원부문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활성화된 급진적 사회운동은 국가부문에 의해 관료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대안적인 사회운동들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기업을 노동자소유로 전환하는 산업공동소유운동(ICOM, 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이 시작되었고(1971년), 정부에서도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개발기관(CDA, 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하였다(1978년). 그러나 대안적 사회운동이 정립되기도 전에 들이닥친 1980년 보수당 대처 수상 집권은 다른 방향에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을 야기시켰다. 보수당 정권은 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함으로써 영리기업의 진출을 확대시켰고, 국가보험을 민간보험의 영역으로 이전시켰으며, 케어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감소시켰다. 국가가 제공하던 복지의 민영화는 자원부문 조직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부문이 정부의 잘못된 의도에 동조하여 대행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은 이러한 우려가 심각하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Talyor, 2004). 다만 많은 자원부문 조직들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강화되고, 더 나아가 상호주의적 정체성을 상실하여 주식회사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민영화가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시장이라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자신들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더 나아가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원부문 조직들에게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영국의 자원부문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신노동당은 제3의 길이라는 정책노선을 제시하면서, 자원부문을 새로운 파트너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실천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시장경제 안에서 사회적 통합과 자기조직화의 기대를 혼합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온정주의와 시장의 사유화지상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eadbeater and Christie, 1999).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업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이익기업(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에 관한 법률을 2005년 제정하여 제도적인 토대

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제도적 환경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 자원부문 조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선단체는 160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선법(charitable act)에 의해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선단체의 지위보다는 주로 회사법에 있는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우애조합법에 따른 우애조합(friendly society), I&P법에 따른 I&P(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의 지위를 갖고 있다. 2005년에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의 지위를 명확히 밝히는 지역사회이익기업(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법이 제정됨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새로운 법적 지위가 만들어졌다.

유한책임회사는 1862년 회사법에 기반하여 처음 만들어진 법인격이다. 이 조직은 명목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일인일표 방식으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이나 자원부문 조직의 특성을 보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업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각종 계약과 상거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1793년 로즈법(Rose's Act)은 '우애조합'을 합법화시켰다. 우애조합은 실업과 질병 등의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보험과 저축의 수단으로 성장하였는데, 중세 길드적인 전통에 바탕을 두고, 이후 상호공제조합 등 노동자계급의 상호주의 전통에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현재 우애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상호보험조직의 형태로 존재한다. 1843년과 1862년에 만들어진 I&P법은 우애조합과 유한보증회사의 혼합형태인 '준 법인기업'으로 여겨지며 상호주의 전통의 조직들이 갖는 독특한 소유구조를 보장하면서도,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I&P법은 단체가 선의를 가진 협동조합 조직이거나, 단체가 사회의 이익을 창출하는 상거래적 사업을 하면서 기업법에 따른 기업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등록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록된다.

2005년에 제도화된 지역사회이익기업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들, 특히 유한책임회사나 I&P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려운 보다 비공식적인 조직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역사회이익기업이 되고자 하는 조직은 민간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공적유한회사 등 세 가지의 회사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공익적인 목적임을 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이윤과 자산을 구성원들에 분배하는 것을 제약하는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이익기업은 매년 회계보고와 함께 지역사회이익보고(annual community interest report)를 작성하여 기업청에 보고를 하는 의무를 갖는다.

3) 사회적 기업의 유형

영국의 사회적 기업 유형화에는 사회적 경제부문에 속하는 조직들이 상당부분 포함되고, 상대적으로 노동통합적 성격을 강조하는 유럽대륙의 사회적 기업 유형화와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사회적 기업 전문지원기관인 Social Enterprise London의 분류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광의의 협동조합 부문

이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으로 구분되어 유형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노동자협동조합의 중요한 기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5> 영국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형태	정의
노동자소유기업 employee owned business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구입하여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협동조합 co-operatives	조합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신용조합 credit union	조합원들이 돈을 저축하고 빌리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개발신탁 development trusts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의 재개발을 위해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기업 등의 파트너십에 의해 형성된 조직
지역공동체 기업 community business	지역주민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의해 설립된 기업
사회적 회사 social firms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노동중개시장 프로젝트 intermediate labour market projects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구직활동, 유급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결성된 조직
자선단체 부설사업체 charity trading arms	자선조직의 일부가 기업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형성된 조직

출처 : SEL, 1999 (정영순, 2004 재인용)

①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 / social cooperative)

노동자협동조합은 영국 협동조합 부문에서 언제나 적은 수였지만, 영향력있는 부분이었으며, 1970년대 시작된 산업공동소유운동(ICOM)의 주도로 활성화되어 1980년대 이후 큰 성장을 경험했다. 이들은 주로 평균 10명 규모의 작은 기업의 외양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확한 비율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의 많은 수는 정부기관인 협동조합개발기관 (CDA)의 지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속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과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이용자들이 협동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케어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차이점을 가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의 개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노동자협동조합의 변형된 형태로 이해된다. 노동자협동조합은 1980년 279개에서 1992년에 1,115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정체되어 1998년 현재 1,100여개로 집계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9년 현재 약 50여개의 케어협동조합과 30여개의 육아협동조합, 그리고 약 30~40개의 사회적 고용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자협동조합의 전체 통계에 포함되어 집계된다.

② 사회적 회사 (social firm)

사회적 회사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시장지향적이며 주된 참여대상은 정신질환자들이다. 약 30~40개의 사회적 회사가 존재한다.

③ 상호공제조직 (mutual organization)

전통적인 상호공제조직보다 급진화된 상호공제조직의 새로운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윤리투자와 사회적 투자가 그러한테, 이들은 새로운 고용을 낳고 있으며, 금융적 배제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④ 상업적인 자원조직 (trading voluntary organization)

자원조직 중에서 비상업적인 옹호활동과 재분배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원조직들은 문화/레크레이션, 교육과 훈련, 복지, 주거 및 환경의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외주계약문화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자선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원조직들은 시설운영 및 재가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⑤ 매개적노동시장조직 (intermediate labour-market organization : ILM)

ILM은 훈련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는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로서, 실업자들이 제한된 기간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조직은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유지되며, 참여자들을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직업훈련에 비해 통합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경제부문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며, 지역사회와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⑥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영국에서 독특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처음에는 농촌지역, 특히 스코틀랜드의 고원지역과 섬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교통수단이나 소매점포와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동원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각광을 받는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명목상 1파운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분을 가지고, 이를 소유하고 통제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은 점차로 확대되어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쇠락한 도심지역 재생의 수단으로 채택되어지고 있다.

6. 해외의 사회적 기업 사례 - 프랑스

1) 사회적 배경 -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의 특징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는 프랑스의 근대 역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인 1780년대 초반, 무수한 모임들이 계몽주의의 정신에 따라서 형제애와 평등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민간단체(association)가 프랑스 대혁명을 태동시키고,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대혁명의 결과,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도리어 혁명정부에 의해 금지당하게 된다. 공화제를 따르던 혁명

정부는 국가를 프랑스 민중들의 집합적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국가와 국민 사이를 매개하는 어떠한 조직도 금지하였다. 길드와 각종 경제적 조직들을 금지한 1791년 Le Chapelier법은 “누구도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과 국가 사이에 매개적인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과 그들 스스로의 협력을 통해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선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혁명정부가 민간단체를 금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길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반동에 대한 우려와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간단체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거에는 폐쇄적인 길드와 같은 성격이었던 숙련된 노동자들의 단체들이 세속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근대적인 단체로 변화되었다. 또한 노동자 계급의 빈곤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발적 민간단체와 상호부조조직들이 19세기 초반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부터 등장한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들이 오늘날 사회적 경제의 조직이라고 일컫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직, 민간단체들이다.

한편 다양한 이론가들이 등장하여, 민간단체 자체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적 민간단체의 성격을 지닐 것과 더 나아가 이러한 생산적 민간단체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associative utopia)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였다. 생시몽(Saint-Simon), 뷔셰(Buche), 르후(Leroux), 푸르동(Proudhon), 푸리에(Fourrier), 카베(Cabet) 등 소위 공상적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로 간주되어온 사상가와 이론가들이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간단체들이 그 불법성을 벗어난 것은 19세기 후반에 와서이다. 결사죄는 1864년에 폐기되었고, 노동조합결성죄는 1884년에, 상호공제조직결성죄는 1898년에 폐기되었다. 자발적인 민간단체들이 합법화된 것은 1901년 민간단체(association)에 대한 법률을 통해서였다. 제도적인 틀을 확보하면서 민간단체들은 새로운 사회를 조직한다는 급진적인 의미가 퇴색하고, 이윤의 생산과 분배를 제한하는 다양한 지위로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직, 민간단체가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체제 내에 자신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은 영리와 비영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목적에서 개별적 주주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집합적 자산의 안정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조직과 구분되게 되었다. 즉, 기준은 영리의 부재가 아니라, 자본이 우세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칙의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비영리성을 민간단체의 기준으로 삼는 영어권의 전통과는 다른 개념이다.

19세기 말 이후, 국가는 국민들의 집합적 의사를 반영하는 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국가개입의 최고능력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점차로 국가개입은 시장경제에 큰 위협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고, 자연스러운 보충물로 인정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재건을 위해 국가적 일체감이 필요하게 되고, 케인즈주의가 국가의 개입을 통한 직접적 경제적 발전을 시도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부터 확장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국민들을 4가지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가족증가)으로부터 보호’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무상의료, 퇴직연금, 노령수당, 실업수당, 가족수당 등의 각종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상호부조의 형태로 자신들이 수행하던 기능을 국가에 흡수당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강제를 받는다. 특히, 상호공제조직은 양

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욕구와 양적이기 보다는 질적인 발전에 대한 바람을 표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대안적인 삶의 형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과 조직들이 등장했고, 이 중에는 스스로 다스리는 기업, 대안적인 기업의 형태로 민주적이면서도 참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조직들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의 대부분은 걱정적이었던 1968년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활성화되었다가,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경제적 압력의 무게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게 되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생산과 소비를 재조직하고자 했던 실험들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틀거리에 갇혀버린 사회적 경제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때마침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고,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실업의 문제를 다루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과 새로운 사회운동 조직들은 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여성의 사회참여, 양극화와 실업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민적이면서 연대에 기반한 경제의 영역을 창출하려는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들은 체제 내화된 사회적 경제와의 이념적 차별성을 위해 스스로를 '연대의 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새로운 사회운동 조직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근린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이를 통해 실업자 특히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들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수행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insertion par activité économique ; IAE)'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 내었다. IAE에 관련된 조직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 실업운동단체, 빈민지역 주민운동조직, 혁신을 추구한 사회복지조직 등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양한 형태의 IAE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민간의 이러한 시도는 1980년에 집권에 성공한 사회당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중앙집권화라는 오랜 전통에 반하여 취해진 분권화 정책의 토대는 정부가 관장하는 복지과 고용프로그램을 사회적 경제 조직과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공공부문이 예산제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이들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1990년 사회당 로까르 내각은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던 IAE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PLIE (지역고용계획 : 지방의원들이 주도하는 조직), FACE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자 : 고용주들의 연합체) 등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하여 기존 IAE 조직들과 연대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대는 1998년 반소외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반소외법을 통해 기존 IAE 조직들이 제도적인 인정과 공식적인 고용정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각종 지원이 안정화되었다. 우파정부가 집권한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IAE 활동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축소, 중단되었으나, 2004년 지방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함으로써 다시 IAE에 대한 지원이 복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제도적 환경

①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련된 제도적 환경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직, 민간단체는 각각 관련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1947년 협동조합 일반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사업자, 유

한책임회사, 법인회사 등 다양한 기업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자산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형성되며, 매년 발생한 잉여의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고 일부는 배분이 불가능한 적립금의 형태로 협동조합 내부에 축적한다. 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상징이며, 협동조합이 청산될 경우에는 공익적인 단체나 다른 협동조합에 귀속되고 조합원들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상호공제조직은 1955년 상호공제조직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합원들의 기여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 연대 그리고 자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조직으로서, 활동의 목적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성애를 고무하며,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의 도덕적 발전을 활성화시키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민간단체의 상당수는 1901년 민간단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소규모 민간단체는 법적인 지위를 별도로 가지지 않은 채 활동을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1901년 법을 따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둘 이상의 사람이 이윤을 나누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지식이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모임”으로 규정되며, 민간단체는 설립을 위해 도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금융거래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한을 받으며, 자산을 보유하거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은 20세기 초 국가와 종교기관간의 갈등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은 조세혜택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②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제도적 환경 - 반소외법과 Scic

고전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 이외에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주요한 제도로는 1998년의 반소외법과 2001년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Scic의 도입을 들 수 있다.

1998년에 제정된 반소외법은 실업과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하면서 IAE 조직들에게 제도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반소외법에서는 IAE에 관련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고용을 위한 활동의 영역에서 개개인에 대한 후견기능과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IAE의 모든 조직들과 체계적인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안정센터(ANPE)가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승인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IAE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광역자활지원협의체(CDIAE)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광역자활기금(FDI)의 운영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IAE 조직들은 정부의 고용정책에서 제도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노동통합이 필요한 실업자들을 정부로부터 의뢰받으면서 이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IAE에 관련된 조직들은 별도의 법적인 지위를 갖기 보다는 민간단체나 상법에 따른 영리기업(개인사업자, 유한책임회사, 법인회사)의 법적 지위를 취한다. 따라서, IAE에 관련된 활동에 따른 지원 이외에는 민간단체나 영리기업과 같은 세제 및 법적제약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협동조합은 유한책임회사나 법인회사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지만, 별도 법에 의해 소유구조의 특수성을 인정받음으로서 영리기업과는 차별적인 세제와 법적환경을 갖는다. 다만, 협동조합은 그 목적에 있어서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에 따르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들은 IAE에 참여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협동조합적인 소유구조와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조합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공익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 Scic)이 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Scic은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본 성격을 갖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Scic은 광역도지사의 승인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한데, 2006년 1월 현재, 승인받은 Scic은 79개이다.

3) 사회적 기업의 유형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980년대 이후 장기실업 등 사회문제에 대응을 하면서 등장한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IAE ; 노동통합)'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1998년 반소의법에 의해 제도적 실체를 인정받은 조직들이다. 여기에는 노동통합기업, 노동통합임시노동기업, 인력소개민간단체, 노동통합작업장, 지역관리기업, 노동통합을 위한 고용주그룹이 속한다. 이들 조직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전국위원회 (le conseil national de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 CNIAE)'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부 및 의회, 지방의회, 노조, 고용주단체 등과 협의체를 이루고 있다. IAE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45%가 일반기업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데 성공했으며, 2001년 현재 2,128개의 조직에서 23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익협동조합이다. 공익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을 원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특징을 형성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① 노동통합기업 (Les entreprise d'insertion : EI)

노동통합기업은 사회통합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에게 일자리의 경험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그 결과 직접 고용하거나 참여자들의 고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서, 1992년에 만들어졌다. 노동통합기업은 반드시 상법상의 기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민간단체의 지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현재 1/3은 기업형태, 2/3은 민간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모든 노동통합기업은 일반 기업과 경쟁관계를 갖는 경쟁부문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한다. 진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내용을 보면, 건설 및 공공공사 (22%), 환경 및 녹지공간 (16%), 수거 및 재활용 (9%), 청소, 식당 등이다. 2001년의 자료에 따르면, 900개의 노동통합기업에서 4,000명의 상근자가 활동중이며, 노동통합이 필요한 12,800명의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통합이 필요한 참여자들은 '통합을 위한 유기계약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d'insertion : CDDI)'을 통해 정부로부터 연간 8,385유로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CDDI는 최대 24개월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반소의법 제정 이후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승인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다. 노동통합기업에게는 참여자에 대한 사회보험금 고용주부담분이 면제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노동통합기업은 1명의 참여자를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서 9,681유로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지원금은 참여자의 법정임금에 모자라는 수준이고,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사례관리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통합기업의 수익에서 부족한 차액을 메우게 된다. 이러한 지원금은 종종 전통적인 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노동통합기업의 활동가들에 따르면 사례관리에 대한 제약, 잦은 인력교체에서 오는 손실, 참여자들의 낮은 생산력을 보

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노동통합기업은 사례관리 등 참여자의 노동능력향상을 위한 보조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한다. CDDI 외에도 노동통합기업은 다양한 방식의 계약노동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만, 관리자(실무자)와 사례관리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된다.

② 노동통합임시노동기업 (Les entreprises de travail temporaire d'insertion : ETTI)

노동통합임시노동기업은 1994년부터 만들어졌으며, 1998년까지는 노동통합임시기업 (entreprise d'intérim d'insertion)이라고 불렸다.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공공공사의 영역에 있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통합임시기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일반기업에서 임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해당기업에 배치되어 일을 하는 임시인력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활동의 특성상 노동통합임시노동기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다른 사회적 기업의 유형보다 높은 일반 일자리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노동통합임시노동기업은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훈련과 배치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최고 18,294유로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실무자 한 명은 10~15명의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임시로 고용한 기업에서 사회보험금 고용주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③ 인력소개민간단체 (Les associations intermédiaires : AI)

1987년에 만들어진 인력소개민간단체는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개인들을 고용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지자체, 기업에 배치하고 근린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참여자들만이 주당 16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한 사용자를 위해 최대 1달만을 일할 수 있고, 이는 1회 갱신이 가능하다. 한 사람의 참여자는 12개월 동안 최대 240시간만 배치될 수 있다. 참여자는 보육이나 각종 개보수 등 근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지자체, 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인력소개민간단체는 실비를 받아서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주된 활동의 영역은 기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활동으로서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된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④ 노동통합작업장 (Les atelier et chantier d'insertion : ACI)

반소외법에 의해 만들어진 자활작업장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적인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광역도의 도지사는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활동만을 개발하는 조직이나, 상업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활동을 혼합하는 조직들과 협약을 맺음으로서 노동통합작업장을 설립할 수 있다. 도지사와의 협약을 통해 CES와 CEC와 같은 단기고용계약 실업대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⑤ 지역관리기업 (Les régies de quartier : RQ)

지역관리기업은 1970년대 루베시 알마가르 구역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전투적인 지역철거반대운동에서 기원하였다. 지역철거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군의 사회화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구역을 재구조화시키는 조직으로서 도심민중작업장(atelier populaire urbain : APU)을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시민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역관리기업은 1901년 민간단체법을 따르는 민간단체이며, 반소의법에 따른 실업대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당수는 노동통합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임대주택사업자들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 지역관리기업은 각종 유지보수, 청소, 개축, 정비 등 지역관리활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이주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지역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활동은 지자체 및 임대주택사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참여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다. 현재 140개의 지역관리기업에서 7,000명의 참여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⑥ 공익협동조합 (La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 Scic)

공익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의 형식과 제도를 동일하게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운영구조에 포함시키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인정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공익협동조합은 3가지 이상의 실질적인 집단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야 한다. 3가지 집단은 반드시 노동자와 서비스의 이용자, 그리고 제3의 집단이어야 하며, 제3의 집단은 재정투자자, 지자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총회에서의 지분은 집단의 수만큼 고르게 나누고, 자본출자의 비율과 무관하게 1인1표의 원칙으로 표결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공익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구성원칙을 따르고, 공익적인 목적을 명시한 정관 및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서 설립된다. 공익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인 활동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판단한 공익적 활동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고유의 특징을 통해, 공익협동조합은 다양한 영역에 속한 주체들 간의 민주적 대화, 시민적 훈련, 집단적 결정을 조직한다는 내재적인 사명과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는 표명된 사명에 의해서 그 공익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공익협동조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지는 않으나,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만약 민간단체에서 공익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전부터 활용하던 각종 단기고용계약프로그램을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노동자협동조합은 단기고용계약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다).

7. 이론적 쟁점 -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 특히 사회학적 접근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쟁점 중에서 사회적 기업의 독특한 특징으로 인정되는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기업의 특징으로서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기업은 활동의 내용이나, 조직의 형태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과 실천에서 최근들어 합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가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지배구조이다. 오늘날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는 공식적인 운영구조에 유급활동가, 자원활동가, 서비스의 이용자, 지자체,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다중이해당사자 구조는 Hansmann, Salamon 등의 비영리조직 이론에서 강조하는 비영리조직의 이윤비배분제약(non-profit distribution constraint)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는 특징으로 간주되곤 한다. Hansmann은 비영리조직이 이윤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얻게 된다고 한다(Hansmann, 1980). 그러나 이윤비배분제약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잔여적 소득청구권'과 '잔여적 통제권' 중 잔여적 소득청구권만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잔여적 통제권을 보유한 행위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조직의 목적이 변형되거나, 자원이 남용되는 현상을 방조하게 된다. 잔여적 통제권에는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바, 민간영리기업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진 목적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잔여적 통제권의 향배가 규정되지 않으면, 비영리조직에서 잔여적 통제권을 위임받은 행위자는 조직의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임의적인 실행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는 잔여적 통제권을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나눠서 보유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요구받는 다양한 역할의 우선순위를 조직의 당초 취지에 맞추어 조정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한다. 물론, 일정한 수준으로 이윤을 배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이윤비배분제약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윤비배분제약을 명시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외부에 조직의 진정성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되고, 민간영리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자신의 목적을 포장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사칭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Bacchiega and Borzaga, 2001).

2)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으로서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와 사회적 자본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갖는 경쟁력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사회적 기업이 다중이해당사자 구조를 채택하는 이유는 기대되는 역할이 다중적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재단 등의 조직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적절한 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는다. 사회적 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대가 사회적 기업이 갖는 당초의 목적에 비추어 조절되는 것이다. 다중이해당사자 구조는 사회적 기업이 최적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기제로서 역할을 한다. 물론, 거꾸로 보면 이러한 구조는 조직의 항상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특정 이해당사자의 과도한 주도성이 고착되기도 한다(Laville and Nyssens, 2001).

무엇보다 다중이해당사자 구조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재생산되는 장치이다. 사

회적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 또한 사회적 기업이 수행하는 공적 기여를 근거로 보조금이나 기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지원이나 판매를 통한 수입이 부재해도 생존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존립 자체의 문제와 직결된다(Evers, 2001). 사회적 자본은 비영리적 성격의 표방으로는 부족한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목적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킴으로서 불완전한 정보의 상황에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서비스의 이용자와 자원활동가가 조직에 참여하여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부와 보조금을 동원할 수 있게 하며, 유급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서 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Laville and Nyssens, 2001). 결국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3) 시민사회 활성화와 새로운 공공영역의 촉매제로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다중이해당사자 구조에 기반하여 재생산되는 사회적 자본은 단순히 사회적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도구적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자본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옮겨놓으면서,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상당수의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자본의 창출 자체를 조직의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사이의 만남이 도구적인 것과 전략적인 것을 뛰어넘어, 공통의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자각한 집단에 속함으로서 보다 큰 상호적 이해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Putnam이 사회와 경제의 활력소로서 사회적 자본이 기능하고 있다고 주목한 북부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잘 발달된 지역이라는 점을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Putnam, 1993).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더 나아가 새로운 공공영역을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인서비스(돌봄노동)의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이용자나 가족들이 서비스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실질적 경험의 관점에서 서비스에 접근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인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불안전함을, 지역사회 수준의 새로운 공공영역을 창출함으로써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Laville and Nyssens, 2001).

8. 결론

사회적 기업은 활동의 내용이나, 조직의 형태 그리고 제도적 지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적 전통과 신사회운동의 정신에 발 딛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에 따르는 복지국가의 위기, 사회양극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으로서 활성화되었으며, 시장과 국가의 한계를 보완/극복하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사회운동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시민사회에 기반하고, 사회운동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결정적인 정체성인 동시에,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은 현재 검토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실업정책의 수단이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를 뛰어넘어 시장지상주의와 사회양극화로 황폐해지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전략으로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성장하였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에 취약한 한국의 사회운동 세력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비시장적이고, 비화폐적인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 일상을 재조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영래, 2003, '한국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발전과제', 『NGO 연구』 1권, 한국NGO학회
- 김홍일, "사회적 기업(경제)가 교육을 위한 외국 사례 검토", 제17차 협동조합연구회,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 노동부 외, 2003,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제13회 국정과제회의 토론회
- 박보희, 2004, '앞서가는 기업경영의 현장 : 사회적기업 -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적 접근』, 전국경제인연합회
- 장원봉, 2004,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가능성', 『2004 사회적기업학교』, 실업극복국민재단
- 정선희, 『사회적 기업』, 2004, 다우
- 정영순, 2004, '영국의 사회적기업 개발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적 접근』,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여성노동자회연합회, 2001,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유럽스터디투어 보고 워크샵 자료집
- Alternatives Economiques, 2003, *Entreprendre autrement*, Alternatives Economiques Hors-série pratique n° 14
- Archambault, E., 1997, 'France', Salamon, L., Anheier, H. (eds.),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Campbell, 1999,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 Chanial, P., Laville, J.-L., 2004, 'French civil society experience : attempts to bridge the gap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Ever, A., Laville, J.-L. (eds.),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Cheltenham
- ECOTEC, 2003, *Guidance on Mapping Social Enterprise*
- Hansmann, H.B., 1980,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The Yale Law Journal*, vol. 89, 5:835~901
- Kendall, J., Knapp, M., 1997, 'The United Kingdom', Salamon, L., Anheier, H. (eds.),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Margado, A., 2004, 'A new co-operative form in France :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SCIC)', Borzaga, C., Spear, R. (eds.), *Trends and challenges for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in developed and transition countries*, Edizioni31, Trento
- OECD, 1999, *Les Entreprises Sociales*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elants et al., 2002, "Preparatory Dossier", *PRAHA Social Economy 2002*
- Salamon, L & Anheier, H., 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 Social Enterprise London, 2000, *Social Cooperatives of Italy*
- Spear, R. 1998, 'United Kingdom', Borzaga, C., Santuari, A. (eds.). *Social Enterprises and*

New Employment in Europe

_____ 2001, 'United Kingdom : A wide range of social enterprises', Borzaga, C., Defourny, J. (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London

_____ 2001, 'United Kingdom : Labour Market Integration and Employment Creation', In Spear, R., Defourny, J., Favreau, L., Laville, J.-L. (eds), *Tackling Social Exclusion in Europe*, Ashgate, Aldershot

Taylor, M. 2004, 'The welfare mix in the United Kingdom', Evers, A., Laville, J.-L. (eds.),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Cheltenham

Worms, J.-P., 2002, 'France : Old and New Civic and Social Ties in France', Putnam, R., (ed.), *Democracies in Flux*, Oxford university press

<http://europa.eu.int/comm/enterprise/entrepreneurship/coop/social-history/social-history.htm>

www.cniae.gouv.fr 프랑스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전국위원회

www.cnlrq.org 지역관리기업연합회

www.coorace.org 프랑스 IAE 기업 연합조직

www.scop.coop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연맹

www.scic.coop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홈페이지

www.univ-mlv.fr/ecosoc 마른라발레 대학